

「화학물질관리법」개정(2025.8.7.)에 따른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고 제도 설명회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 기존 체계

- 획일적 영업허가제
- 일률적 취급시설 검사진단
- 소규모 사업장 부담 과중

## 개선 체계

- 허가제 + 신고제 병행
- 차등화된 검사진단 주기
- 위험도 기반 맞춤형 관리



# 유해화학물질 허가/신고 대상 변경

- ☑ 일부 면제를 제외하고 취급자는 전부 영업허가 대상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변화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영업허가  
면제  
(법 제29조)

영업허가  
대상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영업허가  
대상

영업허가  
/신고 면제  
(법 제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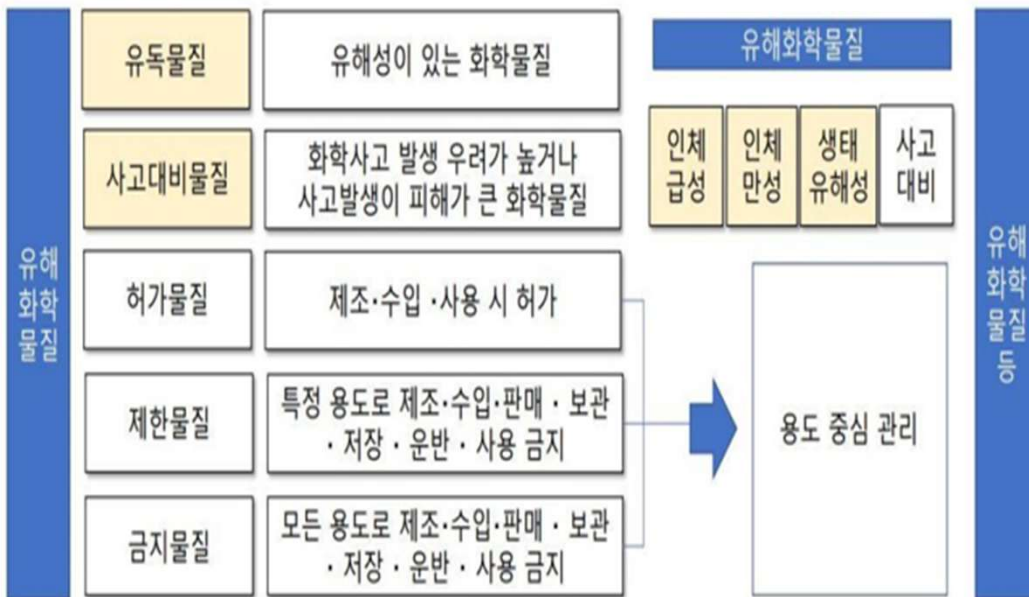
영업신고  
대상

영업허가/신고 비대상

# 유해화학물질의 범주 변경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기존

개정



## ▶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3 사고대비물질별 규정수량(100종)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번호	함량기준 (% 이상)	최하위 규정수량(톤)	하위 규정수량 (톤)	상위 규정수량 (톤)
1	포름알데히드 또는 포름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50-00-0	1	0.05	2	400
2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60-34-4	1	0.025	1	20
3	포름산(폼산)[Formic acid]	64-18-6	25	0.125	5	4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67-56-1	85	0.05	2	400
5	벤젠[Benzene]	71-43-2	85	0.05	2	20

별표2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별 규정수량(1,484종)

연번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번호	구분	함량기준 (% 이상)	최하위 규정수량 (톤)	하위 규정수량 (톤)	상위 규정수량 (톤)
1	97-1-1	과산화 나트륨 [Sodium peroxide]	1313-60-6	급성	5	0.125	5	200
2	97-1-2	과산화 수소 [Hydrogen peroxide]	7722-84-1	급성	6	0.125	5	200
3	97-1-3	과산화 우레아 [Urea peroxide]	124-43-6	급성	17	0.125	5	200
4	97-1-4	구아자틴 염류 [Guazatine salts]	-	급성, 생태	25	0.4	20	400
5	97-1-4	구아자틴 [Guazatine]	13516-27-3, 108173-90-6	급성 생태	1 25	0.125 0.125	5 5	200 200

※ 화학물질의 함량기준이 수치(%) 이상이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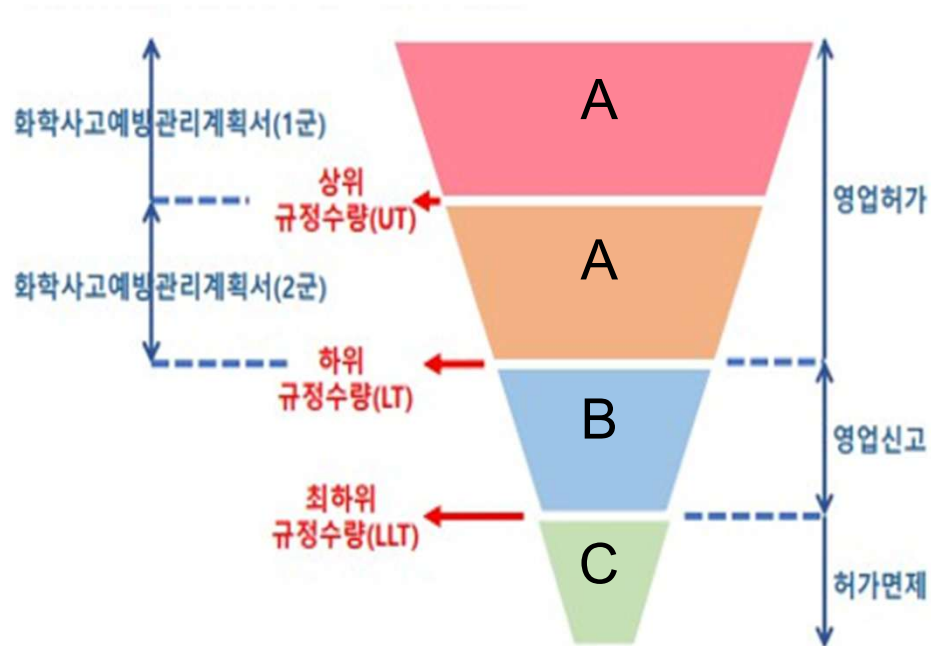
# 영업 허가/신고/면제 기준 변경

○ **기준값** (기존) 전체연간취급량 → (개정) **취급물질별 최대보유량**

○ **비교값** 최하위(LLT), 하위(LT), 상위(UT) 규정수량 구간에 따라 허가/신고/면제로 구분

구분		규정수량	허가/신고	비고
취급물질별 최대보유량	하나 라도	LT 이상	허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톤 초과 차량 보유 시 무조건 허가</li> <li>여러 업종(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업) 중 하나라도 허가대상이면 모두 허가</li> </ul>
		LT 미만 LLT 이상	신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약판매업,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은 무조건 신고</li> </ul>
	모두	LLT 미만	면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나 장치 내장 유해물질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li> <li>「산업안전보건법」, 「연안법」 연구실만 설치운영</li> <li>「약사법」 가정용품으로 판매</li> <li>항공, 공항 취급시설 등</li> <li>항만, 역구내 하역, 운반</li> <li>취급시설 설치운영 X</li> <li>「소비자기본법」 소비생활</li> </ul>

# 영업 허가/신고/면제 예시



구분	취급물질	사업자
영업자 1	A구간 물질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허가 신청</li> <li>- 화관서 적합 판정 필요</li> </ul>
영업자 2	A구간 2종 B구간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허가 신청</li> <li>- 화관서 작성시 A구간 2종의 장외평가 포함</li> <li>- B구간 1종은 화관서 작성 시 장외평가 제외</li> </ul>
영업자 3	A구간 2종 B구간 1종 C구간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허가 신청</li> <li>- 화관서 작성시 A구간 2종의 장외평가 포함</li> <li>- B구간 1종은 화관서 작성 시 장외평가 제외</li> </ul>
영업자 4	B구간 물질만	• 영업신고
영업자 5	B구간 2종 C구간 3종	• 영업신고
비영업자	C구간 물질만	• 영업허가 신고 면제

# 영업허가 등 면제대상 정비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 31조)

## 삭 제

-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 제외)을 사용하는 자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 제외)을 사용하는 자
-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 한정)을 사용 & 화방서 제출 대상 외 & 소량 취급시설만 설치 운영자

## 신 설 등

### 법 제29조

- 기계나 장치 내장 유해물질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제조X)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보관·저장, 운반, 사용업자
- 항만, 역구내 일정한 구역 내에서 유해물질 하역, 운반

### 시행규칙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허가 받은 자 중 각 목 해당 가. 「연안법」 연구실만 설치·운영, 나. 취급시설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 「약사법」 약국개설자 등이 가정용품으로 판매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로서 소비생활 위하여 사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항공보안법」 지정된 보호구역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납 (7439-92-1, 고체상태로 분말, 미립자 등 체류나 날릴 우려X)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혼합물을 담배용도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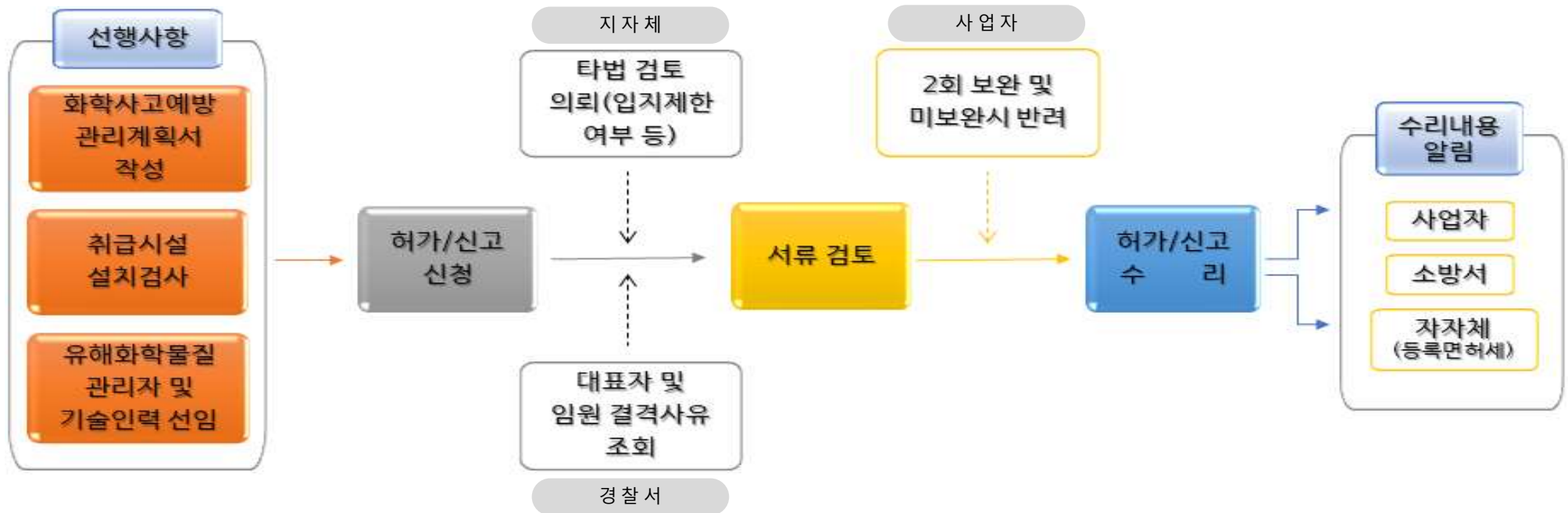
## [참고] 영업 허가/신고 적용범위 외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 「약사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 「화장품법」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농약관리법」 농약과 원제
- 「비료관리법」 비료
- 「식품위생법」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사료관리법」 사료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약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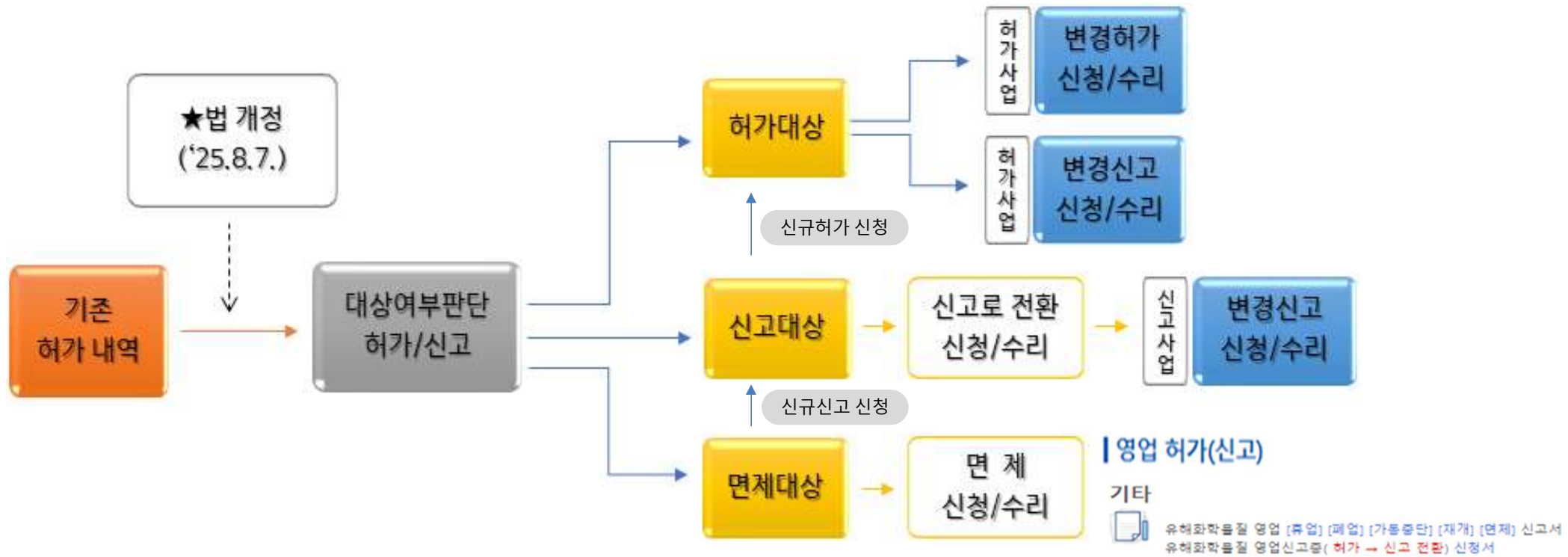
-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군수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독성가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 제3조(적용범위)의 제2항 예외규정 有

# [신규] 허가/신고 처리 절차



# [변경] 허가/신고/면제 처리 절차



※ 신고사업장이 허가대상이 되었을 경우  
 변경이 아니라 신규허가 신청하여야 함

# 허가/신고/면제/변경 전 선행사항 - ① 사업장 입지가능 여부 검토

- ☑ 타 법령(약 12개)\*에 따라 최초 허가/신고 시 또는 최대보유량 증가로 허가 전환 시  
**입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가능하다면 허가 신청

\*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교육환경법, 농어촌정비법, 수도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법, 환경영향평가법, 지자체 조례 등

\* 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체 또는 사용금지물질 확인 필요(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사업명 > 원문정보 > 협의내용)

## ▶ 지자체 회신 예시

- ◇ 「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업, 보관저장업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하여 가능 → '공장 부대시설'에 알선판매업 불가
-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판매업'은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입지 불가(지원시설 제외)  
→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판매업 불가(지원시설은 가능)
-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마.유독물 보관. 저장.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야 함 → '용도변경' 필요

# 허가/신고/면제/변경 전 선행사항 - ② 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 KORA 내려 받기

- (1)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nics.me.go.kr>) 접속
- (2)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
- (3) KORA ver.6 배포의 첨부파일 내려받기(매뉴얼 참고)

## KORA 설치

- (1) 내려 받은 폴더에서 압축파일(.zip) 풀기
- (2) Setup(windows installer) 파일 선택
- (3) 설치 마법사 순서대로 진행
- (4) 바탕화면서 생성된 KORA v.6 아이콘 확인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

설계용량 x 비중

1. 단위공장별 최대보유량 산출

1) ( )공장 최대보유량 산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용량(m3)	취급량(ton)
오황화인	BAG	12.1(600KG*17EA)	10.2
안료 흰색 32	BAG	24.2(600KG*34EA)	20.4
메틸알코올	BAG	24.2(600KG*34EA)	20.4

2. 유해화학물질별 사업장 내의 최대보유량 산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내 최대보유량 (ton)	작성수준	구분 근거	
			하위규정 수량 (ton)	상위규정 수량 (ton)
오황화인	10.20	제외대상	20	500
안료 흰색 32	20.40	2군	20	400
메틸알코올	140.45	2군	5	400

3. 작성수준 도출

작성수준	1군

1, 2군  
화방서  
작성대상

※ 작성수준이 1,2군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적합] 제출  
화관서 면제증빙 KORA ver.6 별지 제 1, 3, 5, 6, 9호 제출(수정불가)

# 허가/신고/면제/변경 전 선행사항 - ② 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업체의 관리수준 확인

### 부칙 제5조(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재정보한 위험도를 적용한다.

1. **화관법 관리수준 확인** 화관법 민원 24 로그인 → 화학안전관리번호 → 화관법 관리수준확인 메뉴 클릭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화관법 관리수준 확인'은 귀 사업장에서 가장 최근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현재 귀 사업장의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시설정보(최대보유량)에 맞게 별도로 관리수준(영업허가 대상, 화관서 작성수준, 위험도, 시설검사주기, 안전진단 주기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정보**

화학안전관리번호	ABC005N	상호(명칭)	한강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XXXXXX	주소(사업장)	서울시 XXXX
장외영향평가서	동지번호: 2000-0001호	장외영향평가서 격합통보일	2021-01-01

###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취급물질 및 최대보유량 정보

아래 정보는 귀 사업장에서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정보에 따른 물질별 최대보유량입니다. 현재 사업장 현황에 맞게 수정해서서 급성-만성-생태유해성에 따른 규정수량으로 계산-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번	화학물질명	CAS No.	고유번호(유독물질)	함유량(%)	최대보유량(톤)	성상	관리
1	디노셀 [Dinoseb]	88-85-7	97-1-24	0.5	10	액체	수정 삭제
2	디노셀 [Dinoseb]	88-85-7	97-1-24	2	20	액체	수정 삭제
3	디노셀 [Dinoseb]	88-85-7	97-1-24	50	250	고체	수정 삭제
4	에스펜발라레이트 [Esfenvalerate]	66230-04-4	99-1-496	0.5	10	기체	수정 삭제
5	에스펜발라레이트 [Esfenvalerate]	66230-04-4	99-1-496	2	20	기체	수정 삭제
6	에스펜발라레이트 [Esfenvalerate]	66230-04-4	99-1-496	50	250	액체	저장 취소

수정하여 현행화

계산하기

물질명	CAS No.	고유번호	유해성 구분	함량기준(%)	최대보유량(톤)	화관서 작성수준	영업허가 신고 구분
디노셀 [Dinoseb]	88-85-7	97-1-24	만성	0.3	280	2군	허가
			급성	1	270	1군	허가
			생태	2.5	250	1군	허가
에스펜발라레이트[Esfenvalerate]	66230-04-4	99-1-496	기타	1	250	면제	신고

※ 기타: ① 상온-상압 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함  
②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 \*\*\*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함

⇒ 위 표에 따라 귀 사업장은 영업[허가] 대상이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작성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현행화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정보 기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정보

사고시나리오(경외) 개수 합(개)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연)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m)	영향범위 내 주민수 합(명)	관리	계산하기	위험도 점수	위험도	관리
10	1	200	75	수정		6	나	수정

◆ 위험도 재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 4. 영업허가-신고 및 시설검사-안전진단 주기 확인

영업허가-신고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위험도	취급시설 정기검사주기	안전진단 주기
○허가 ○신고 ○면제	○1군 ○2군 ○면제	○가 ○나 ○다	○1년 ○2년 ○3년 ○4년 ○면제	○4년 ○8년 ○12년 ○면제

# 최대보유량의 개념 -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별표4]

## ▪ 최대보유량

-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산정(예외 없음)
-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시설 및 저장·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 탱크로리, 사외배관, 취급중단 시설 제외
- 취급시설 **설계용량, 순수물질 비중(상온)** 등 고려
- 혼합물 : 전체 혼합물의 총량으로 산정(시험값에 따른 비중은 증빙 필요)

## ▪ 제조·사용시설

- 투입순서 상관없음
- 2개 이상의 성상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부피를 고려하여 용량 산정 가능(증빙 필요)    ↳ 증빙 불가능, 설계용량 및 액상의 비중 이용
- 기상물질 : 운전조건(압력, 온도) 고려
- 고압가스 : 압축 및 액화 등의 저장 방식 고려

## ▪ 저장·보관시설

- 보관시설은 보관 구획도를 기준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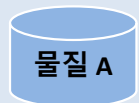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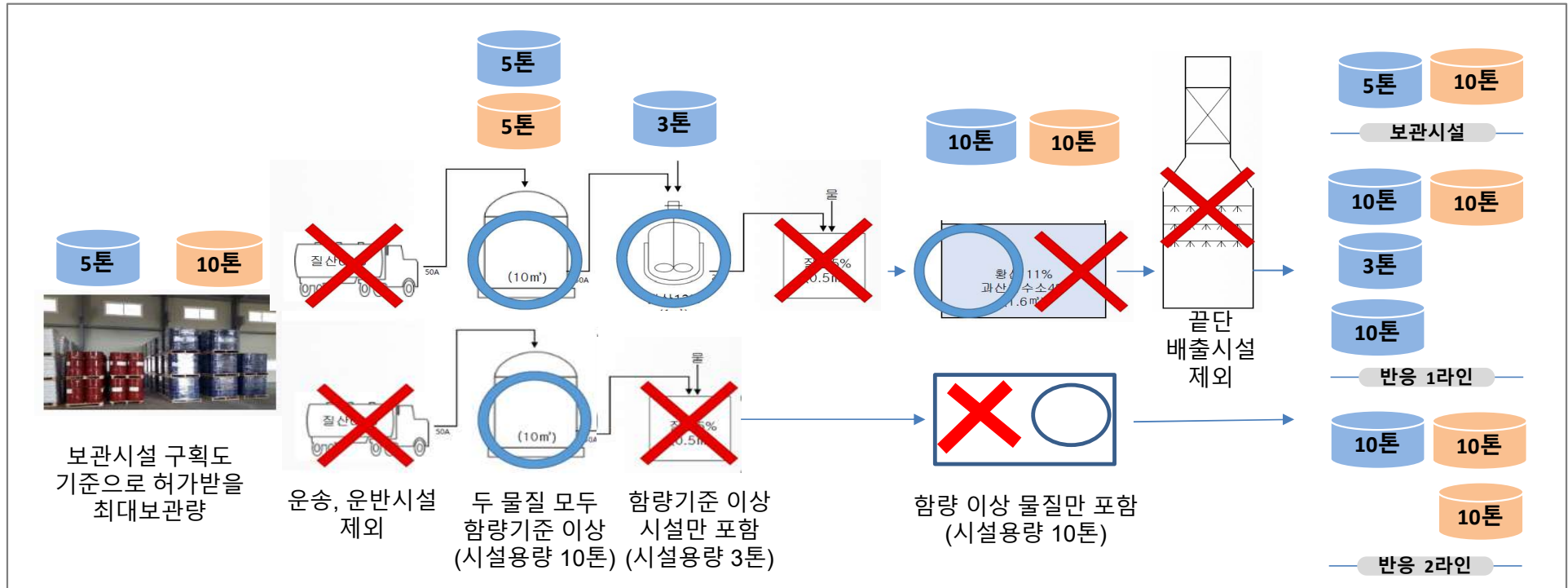
(예시)

연번	화학물질명	성상	규격 (kg)	용기 (드럼..)	수량	총 보관량

## ▪ 저확산물질

- 규정수량 고시에서 해당 물질마다 \* 표시 ⇒ **하위 규정수량 400톤 ⇒ 2군**

# 최대보유량의 개념



물질 A

최대보유량 = 38톤



물질 B

최대보유량 = 40톤

# 허가/신고/면제/변경 전 선행사항 - ③ 규정수량 구간 확인으로 대상 구분

##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3 사고대비물질별 규정수량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번호	합량기준 (% 이상)	최하위 규정수량(톤)	하위 규정수량 (톤)	상위 규정수량 (톤)
1	포름알데히드 또는 포름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50-00-0	1	0.05	2	400
2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60-34-4	1	0.025	1	20
3	포름산(폼산)(Formic acid)	64-18-6	25	0.125	5	4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67-56-1	85	0.05	2	400
5	벤젠(Benzene)	71-43-2	85	0.05	2	20

별표2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별 규정수량

연번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번호	구분	합량기준 (% 이상)	최하위 규정수량 (톤)	하위 규정수량 (톤)	상위 규정수량 (톤)
1	97-1-1	과산화 나트륨 [Sodium peroxide]	1313-60-6	급성	5	0.125	5	200
2	97-1-2	과산화 수소 [Hydrogen peroxide]	7722-84-1	급성	6	0.125	5	200
3	97-1-3	과산화 우레아 [Urea peroxide]	124-43-6	급성	17	0.125	5	200
4	97-1-4	구아자틴 염류 [Guazatine salts]	-	급성,생태	25	0.4	20	400
5	97-1-4	구아자틴 [Guazatine]	13516-27-3, 108173-90-6	급성 생태	1 25	0.125 0.125	5 5	200 200

내 사업장은 영업(허가 or 신고 or 면제) 대상 사업장임을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44호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취급방식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제조 [ <input type="checkbox"/> ] 보관·저장 [ <input type="checkbox"/> ] 판매 [ <input type="checkbox"/> ] 사용 [ <input type="checkbox"/> ] 운반					
유해화학물질							
구분	물질명	고유번호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용도	최대 보유량 (ton)	대상구분 (허가/ 신고/ 면제)	연간취급 예정량 (톤 또는 m³)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input type="checkbox"/>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태유해성물질 [ <input type="checkbox"/> ]사고대비물질	오황화인	97-1-214	1314-80-3	용접제	10.20	허가	50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input type="checkbox"/>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input type="checkbox"/> ]생태유해성물질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고대비물질	트리메틸 아민	2021-1-10 27	75-50-3	중간체	0.02	면제	100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input type="checkbox"/>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input type="checkbox"/> ]생태유해성물질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고대비물질	메틸 알코올	97-1-80	67-56-1	용접제	140.45	허가	200
[ <input type="checkbox"/>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input type="checkbox"/>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input type="checkbox"/> ]생태유해성물질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고대비물질	벤젠	-	71-43-2	판매	1	신고	15

※ 하나라도 LT 이상이면 허가, 하나라도 LT 이상이면 신고, 모두 LT 미만이면 면제대상(P4 참고)

※ 한 사업장에 여러업종(판매, 제조, 사용, 보관저장)증이 있을 경우 1개의 업종이라도 허가대상 이라면 나머지 업종도 모두 허가대상

# 허가/신고/면제/변경 전 선행사항 - ④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취급시설

취급물질별		규정수량 (업종 단위)	허가/신고	예외	위험도 (사업장 단위)		화방서 작성 대상 여부	[최초] 취급시설 설치검사 대상 여부
최대 보유량	하나 이상	LT 이상	허가대상	-	1군	가	대상 * 운반업 및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은 비대상	대상
						나		
	모두	LLT 미만	면제대상	-	2군	가		
						나		
		1톤 초과 차량 보유	-			비대상		
		LT 미만 LLT 이상	신고대상	시약판매업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LLT 미만	면제대상	-			면제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http://www.nics.me.go.kr)) → 자료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접수안내 → 서식다운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참고

## ○ 취급시설 설치검사 신청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https://www.safechem.or.kr>)
- 한국가스안전공사([cyber.kgs.or.kr](http://cyber.kgs.or.k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kosha.or.kr/cheminsp/>)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 ✓ 법 제23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

## ✓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과 2) 허가/신고자가 판매의 목적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건본품**을 택배로 운반·보관하는 시설
- 하위 규정수량 (LT)미만 취급사업장 내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싹거나 내리는 경우 제외)
- 군사, 의료/항만(승인) 철도 내 용기·포장 보관시설(지체없이 반출)
- 농약판매업, 보호구역 내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공항운영자

## ✓ 화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임시보관하는 시설
- 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 제거 및 감소하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시설**(투입위한 저장 또는 사용시설 제외)  
\*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 취급 시 기계 및 장치 내장되어 누출 없는 경우
- 특정기능 발휘 고체형태 제품에 함유된 경우
- 시설 유지보수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면제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법 제24조제4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환경부고시)

☑ 시행규칙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 설치·정기·수시검사 면제

\* 연속적으로 60일 초과 운영하는 시험생산용 설비 제외

- 1) 회분식의 경우: 100kg 이상/1회
- 2) 연속식의 경우: 10kg 이상/1시간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

: 설치·정기·수시 검사 면제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 시설

: 정기검사 면제

## ▪ 최하위 규정수량(LLT) 미만 **사업장** 취급시설

: 설치·정기검사 면제

## ▪ 환경부장관 고시하는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면제

- 1)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사용과정 중 유출·누출 없는 경우
- 2)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화학적 작용 일어나는 것 제외) 중 유출·누출 없는 경우
- 3) 우편 또는 택배 차량으로서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건본품이 유출·누출 되지 않도록 포장된 경우

# 허가/신고/면제/변경 전 선행사항 - ⑤ 관리자

영업 허가/신고	관리자		기술인력	비고
	책임자	점검원		
허가대상	1명	연간취급량·종사자수 비례	1명 운반업 & 10명 미만 판매업 & 10명 미만 사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 가능) 사업장 내 관리자와 기술인력</li> <li>- 동일부지 타사업장과 관리자(단, 공동활용계획서 제출)</li> <li>○ (중복 불가) 타사업장의 기술인력</li> <li>- 책임자와 점검원(단, 종업원 10명 미만이면 중복 가능)</li> </ul>
신고대상	1명 시약판매업 중 LLT 미만		면제	
면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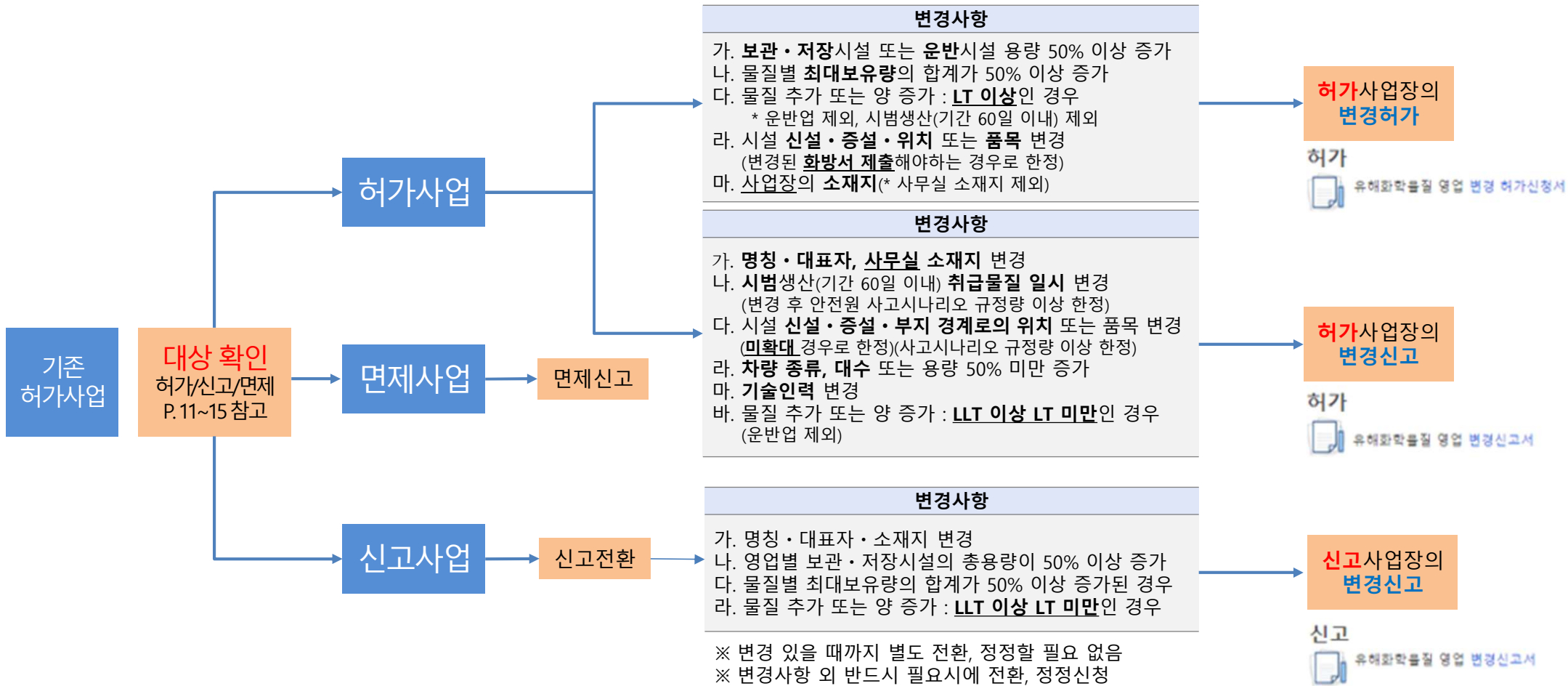
구분	관리자 선임(화관법민원24' 별도 신청)																																																	
요건	1)~5) 중 한 가지 충족 1) 시약판매업&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안전교육(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8시간) 이수 2) 자격증 소지(*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위험물기능장 등) 3) 전문대학 화학과목 이수 + 안전교육(32시간) 4) 산업수요 맞춤형, 특성화고 화학 관련 학과졸 + 안전교육(32시간) 5) 화학물질 취급현장 3년 이상 + 안전교육(32시간)	< 제조, 판매, 보관저장, 사용업 허가 시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취급량/년 (취급량은 영업허가종 기준)</th> <th colspan="3">종업원 10명 미만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가능)</th> <th colspan="3">종업원 10명 이상</th> </tr> <tr> <th>책임자</th> <th>점검원</th> <th>총인원</th> <th>책임자</th> <th>점검원</th> <th>총인원</th> </tr> </thead> <tbody> <tr> <td>천톤 미만</td> <td>1명</td> <td>-</td> <td>1명</td> <td>1명</td> <td>1명</td> <td>2명</td> </tr> <tr> <td>천톤 이상 만톤 미만</td> <td>1명</td> <td>1명</td> <td>2명</td> <td>1명</td> <td>2명</td> <td>3명</td> </tr> <tr> <td>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td> <td>1명</td> <td>2명</td> <td>3명</td> <td>1명</td> <td>3명</td> <td>4명</td> </tr> <tr> <td>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td> <td>1명</td> <td>3명</td> <td>4명</td> <td>1명</td> <td>4명</td> <td>5명</td> </tr> <tr> <td>백만톤 이상</td> <td>1명</td> <td>4명</td> <td>5명</td> <td>1명</td> <td>5명</td> <td>6명</td> </tr> </tbody> </table> ◇ 제조업, 보관·저장업: 종사자수 500명당 1명씩 추가, ◇ 판매업, 사용업: 종사자수 5,000명당 1명씩 추가	취급량/년 (취급량은 영업허가종 기준)	종업원 10명 미만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가능)			종업원 10명 이상			책임자	점검원	총인원	책임자	점검원	총인원	천톤 미만	1명	-	1명	1명	1명	2명	천톤 이상 만톤 미만	1명	1명	2명	1명	2명	3명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	1명	2명	3명	1명	3명	4명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	1명	3명	4명	1명	4명	5명	백만톤 이상	1명	4명	5명	1명	5명	6명
취급량/년 (취급량은 영업허가종 기준)	종업원 10명 미만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가능)			종업원 10명 이상																																														
	책임자	점검원	총인원	책임자	점검원	총인원																																												
천톤 미만	1명	-	1명	1명	1명	2명																																												
천톤 이상 만톤 미만	1명	1명	2명	1명	2명	3명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	1명	2명	3명	1명	3명	4명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	1명	3명	4명	1명	4명	5명																																												
백만톤 이상	1명	4명	5명	1명	5명	6명																																												
제출 자료	[공통] 별지 49, 50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명단,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안전교육이수증, 2) 자격증, 3)~4)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안전교육 이수증, 5) 경력증명서, 안전교육이수증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a href="http://edu.kcma.or.kr">http://edu.kcma.or.kr</a> ), 한국환경보전원( <a href="http://www.kepaedu.or.k">www.kepaedu.or.k</a> )에서 교육이수																																																	

# 허가/신고/면제/변경 전 선행사항 - ⑥ 기술인력 선임

영업 허가/신고	관리자		기술인력	비고
	책임자	점검원		
허가대상	1명	연간취급량·종사자수 비례	1명 운반업 & 10명 미만 판매업 & 10명 미만 사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 가능) 사업장 내 관리자와 기술인력</li> <li>- 동일부지 타사업장과 관리자(단, 공동활용계획서 제출)</li> <li>◦ (중복 불가) 타사업장의 기술인력</li> <li>- 책임자와 점검원(단, 종업원 10명 미만이면 중복 가능)</li> </ul>
신고대상	1명		면제	
면제대상	시약판매업 중 LLT 미만			

구분	기술인력 선임(영업 허가 신청 시 서류 제출)
요건	<p>1)~5) 중 한가지 충족</p> <p>1) 기술사(화공안전, 화공, 가스 등), 기능장(위험물, 가스 등)</p> <p>2) 석사학위(산업안전, 수질환경, 위험물, 가스 등) + 실무 3년</p> <p>3) 기사(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수질환경 등) + 실무 5년5</p> <p>4) 산업기사(위험물 등) or 기능사 or 유독물 취급 기능사 + 실무 7년</p> <p>5) (종업원 30명 미만 경우) 기술인력 교육과정 이수 + ① or ② or ③ or ④ or ⑤</p> <p>① 2)학력 or 3) 자격 or 4) 자격    ② 경력 5년    ③ 화학과 전문대 졸업    ④ 산업수요 맞춤형 or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p>
제출자료	[공통]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 자격증, 2)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3)~4) 자격증, 경력증명서, 5) 교육 이수증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 변경허가/변경신고



# 사안별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변경)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 기본증명서
  - \* (외국인의 경우) 1) 여권사본  
2)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대사관·영사관 날인 사서인증서 또는 가정법원 발행 후견인등기 부존재증명서
4. 건축물 대장(위치 표시)    5. 임/전대차 계약서(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6.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7. 취급시설 명세서(면적(m<sup>2</sup>), 용량(m<sup>3</sup>),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
  - \* (제조업, 사용업의 경우)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공정설명서
8. 타 법령 검토 관련 확인 사항
  - \* 대기·수질·폐기물 배출시설 허가증/신고증/신고필증, 위험물설치허가증 등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적합)
10. (신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1,2군) 및 화학물질안전원 검토결과서(적합), 환경책임보험 가입증서(1군)
  - \* 면제 대상이면 근거로 KORA 별지 1,3,5,6,9호 서식 제출
11. (변경) (총괄영향범위 확대) 변경된 화방서 및 검토결과서(적합)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및 KORA 별지 1,3,5,6,9호
12. 기술인력 자격사항 증빙서류
13. 취급하는 물질 별 MSDS 각 1부(제조자/공급자 정보 기재 확인)
14. 차량등록증 및 사진(차량 앞뒤면 사진, 번호판과 방재장비 함께 찍은 사진)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16. 차고지 증명서 및 세차장 위탁계약서
17.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필증(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18. 변경시설 착공 및 준공사항 증명서류(발주서, 사진, 도면 등)
19.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분	민원내용	제출서류 번호
신규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9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1, 2, 3, 4, 5, 6, 13, 19
	운반업	1, 2, 3, 4, 5, 6, 7, 8, 9, 12, 13, 14, 15, 16, 17, 18, 19
변경	물질 추가, 양 증가	1, 6, 11, 13, 19
	시설 신설·증설·위치, 용량	1, 9, 11, 17, 18, 19
	사업장 소재지	(시설o) 1, 2, 4, 5, 6, 7, 8, 9, 10, 17, 18, 19 (시설X) 1, 2, 4, 5, 19
	사업장 명칭	1, 2, 19
	대표자	1, 2, 3, 19
	차량 추가 또는 변경	1, 9, 14, 18, 19
	최대보유량	1, 6, 9, 11, 19














※ 화관법민원24의 자세한 내용 참고

47번 공지사항 → 관련 바로가기 클릭 → 한강청 누리집

# 화관법민원24 적정 경로 신청

- 화관법민원24(<https://isis.me.to.kr/cdms/>) 가입승인
  - 사업자명 = 별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명으로 가입
  - 종 된 사업장 등 주소가 다른 사업장은 별도 아이디로 신청
    - \* 사업장 주소지별로 화학안전번호 부여
- 민원신청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자의 검토여부와 상관없이 8시간 후에 자동접수
- 접수 전 사업자는 취소 가능하나 담당자는 반려 불가
- 수입인지 **환불 불가**
  - 신규허가(27000원), 변경허가(18000원), 변경신고(18000원)
  - 신규신고(11,700원), 변경신고(7,200원)
  - 시약판매업&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은 수수료 없음
- \* 이미 접수에 사용된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인지'에 해당하지 않아 **환불 불가**(2025.9.5., 환경부 화학안전과 공지)

## | 영업 허가(신고)

<b>허가</b>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사용업] [유반업] 허가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허가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b>신고</b>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사용업] [유반업] 신고서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서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변경 신고서
<b>기타</b>  유해화학물질 영업 [휴업] [폐업] [가동중단] [재개] [연제] 신고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환( 허가 → 신고 전환) 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종류 변경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국내대리인 [선임] [해임] 사실 신고서

# 화관법민원24 민원작성 방법

## 신청 정보

신청인(신고인)

상호(명칭)	한강정화학단	업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span>선택</span>
화학안전관리번호	ADR946N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성명(대표자)	한강정	전화번호	0317942851
* 생년월일	770523 (ex. 주민등록번호가 770523-1234567 인 경우, 7705231 까지만 입력)		
주소(사업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변경신정음		
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주소검색	
담당자 성명	한강정화학단	담당자 연락처	0317942851
담당자 이메일	*보완요청 및 민원완료시 이메일로 통보해 드립니다. hg7000@korea.kr	담당자 휴대폰	*보완요청 및 민원완료시 SMS로 통보해 드립니다. 010-0000-0000

신청사항

매출액(사업장) (억원)		* 사업장면적(m <sup>2</sup> )	200.00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연락처	
* 종업원수(명)	65	최대보유량 합계(톤)	22.500000
* 관리자 공동 활용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단독 <input type="radio"/> 공동	취급시설 공동 활용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단독 <input type="radio"/> 공동
취급시설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임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대상 <input type="radio"/> 비대상
전체 연간 예상 취급량 (톤)	80.000000		

\* 매출액(사업장) :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을 적습니다(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취급시설 공동 활용여부는 보관-저장시설 소재지의 취급시설이 '소유' 또는 '임차'일 경우에만 선택가능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정보

\* 검색 결과에 없는 유해화학물질은 각 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 물질 검색은 CAS.No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역설 양식을 활용하려는 경우, 각 물질별로 국문명, 영문명, CAS No.를 시스템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국문명		영문명	
CAS No.	06-5-3		
물질구분	<input type="checkbox"/> 전채선택 <input type="checkbox"/> 인체등유해성물질 <input type="checkbox"/> 제한물질 <input type="checkbox"/> 금지물질 <input type="checkbox"/> 허가물질 <input type="checkbox"/> 사고대비물질		

검색

순번	국문명	영문명	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	선택
4	브펜카프	Bufencarb	8065-36-9	97-1-116					<span>선택</span>
3	D-erythro-Pent-1-enitol, 1,4-anhydro-2-deoxy-5-O-[(1,1-dimethylethyl)dimethylsilyl]-1-C-(tributylstannyl)-	D-erythro-Pent-1-enitol, 1,4-anhydro-2-deoxy-5-O-[(1,1-dimethylethyl)dimethylsilyl]-1-C-(tributylstannyl)-	149065-35-0	97-1-139	06-5-4	n	n		<span>선택</span>
2	리튬 테트라플루오로(옥살라토)포스페이트	Lithium tetrafluoro(oxalato)phosphate	521065-36-1	2012-1-648					<span>선택</span>
1	2,2',3,3',4,4',5-Heptachlorobiphenyl	2,2',3,3',4,4',5-Heptachlorobiphenyl	35065-30-6	97-1-394	n	06-4-46	n		<span>선택</span>

# 화관법민원24 민원작성 방법

##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 취급시설	*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추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임차	한강정화확단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로1번길 변경신청용	0317900000	수정 삭제

## 유해화학물질

* 물질명	고유번호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 용도	* 최대보유량(톤)	* 연간 취급예정량 (톤)	취급시설 보유여부	보관 저장여부	추가
황산은	97-1-92	10294-26-5	34. 실험실	1.000000	20.00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정 삭제
톨루엔		108-88-3	9. 세정	20.000000	50.00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정 삭제
사염화 탄소	97-1-126	56-23-5	28. 연료	1.500000	10.00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정 삭제

## 보관시설능력 [ 보관시설만 입력하세요. ]

* 취급시설	상호	* 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량	최대보관량 (톤)	추가	물질명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임차	한강정화확단	보관시설	200.000000 m <sup>3</sup>		수정 삭제	황산은 [X] 톨루엔 [X]

\* 최대보관량은 용량의 단위가 m<sup>3</sup> 일경우에만 입력할수있습니다.

## 저장시설능력 [ 저장시설만 입력하세요. ]

* 취급시설	상호	* 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량	추가	물질명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소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임차	한강정화확단	CT저장탱크	2.000000 m <sup>3</sup>	수정 삭제	사염화 탄소 [X]

## 제조·사용시설능력 [ 제조·사용시설만 입력하세요. ]

* 취급시설	상호	* 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량	추가	물질명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임차	한강정화확단	HG 제조공정	30.000000 m <sup>3</sup>	수정 삭제	사염화 탄소 [X] 톨루엔 [X] 황산은 [X]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소유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차	한강정화확단	UE 제조공정	50.000000 m <sup>3</sup>	수정 삭제	톨루엔 [X] 황산은 [X]

## 운반시설 능력

* 취급시설	상호	차량번호	차량종류	최대적재량 (톤)	추가	물질명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임차	한강정화확단	25모3058	트럭	3.50	수정 삭제	톨루엔 [X]

## 화관법민원24 민원작성 방법 — 명확한 파일명으로 저장

첨부서류명	용량(KB)	관리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신청서.pdf	774	삭제
2. 사업자등록증.pdf	1,042	삭제
3. 법인등기부등록.pdf	739	삭제
4. 건축물대장.pdf	142	삭제
5. 임전대자 계약서.pdf	1,067	삭제
6.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pdf	161	삭제
7. 취급시설 명세서.pdf	160	삭제
8. 타 법령 검토 관련 확인사항.pdf	1,607	삭제
9.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pdf	1,607	삭제
12. 기술인력 자격사항 증빙서류.zip	596	삭제
13. 물질별 MSDS.zip	596	삭제

# 주요 보완사항

- ☑ **제출서류 누락** \* 화관법민원24 접속 → 47번 공지사항 → 관련 바로가기 클릭 → 한강청 홈페이지 제출서류 리스트 확인
- ☑ **관리자 선임절차 별도 진행**  
\* 화관법민원24 접속 → 민원신청 → 신규민원 작성 → 도금/관리자 신고 → 관리자 선임 신고서 클릭
- ☑ **신청사항란 빠짐없이 작성**, 단독&공동, 대상&비대상, 없음&소유&위탁&임차 체크
- ☑ **유해화학물질란** 취급시설 보유여부, 보관저장여부 체크
- ☑ **저장, 제조·사용, 운반시설 능력란 '시설번호 또는 명칭' =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상 명칭' 자료**  
\* 단, KORA 별지서식9의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에 세부 장치·설비명 반드시 명기
- ☑ **자료별**(신청정보란 & 연간취급예정량 자료 & KORA 별지1)의 '**최대보유량값**' 상이
- ☑ **사업장 화학사고** 대응 위한 소방서 제출용 '**전체배치도**' 확인
- ☑ **금번 신고가 수리되어도 최대보유량 증가(LT 이상)로 허가신청 시 입지불가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건축법, 국토계획법, 산업집적법, 교육환경법 등 **개별 법률의 준수사항과 위반여부 사전 확인**

# 경과조치

## ▶ 영업허·가영업신고

- ☑ LLT~LT 취급자로 영업신고 대상이지만 개정 법령 시행일 이전에 영업허가 받은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영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
- ☑ 시행 전부터 취급하던 자(기존 면제 대상)로 법령 개정에 따라 최초로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 시약판매업

- ☑ 개정 법령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LLT이상의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자 선임 필요(신규 신고자는 즉시)
- ☑ 위와 같은 자가 선임·고용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절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함

# 영업 허가/신고 이후 준수사항 - 화관법민원24에서 준수사항 확인가능

물질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사항		
유해 화학 물질	유독 물질	· 수입신고(제20조)	영업허가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급기준(제13조)</li> <li>· 개인보호구(제14조)</li> <li>· 진열·보관량 제한(제15조)</li> <li>· 표시(제16조)</li> <li>·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23조)</li> <li>· 취급시설검사(제24조)</li> </ul>
	사고 대비 물질	-		
	제한 물질	· 수입허가(제20조) · 수출승인(제21조)		
	허가 물질	· 제조·수입·사용허가(제19조)		
	금지 물질	· 시약 제조·수입·판매허가(제18조) · 수출승인(제21조)		



물질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사항		
유해 화학 물질	인체급성 유해성물질	· 수입신고 (제20조)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급기준(제13조)</li> <li>· 개인보호구(제14조)</li> <li>· 진열·보관량 제한(제15조)</li> <li>· 표시(제16조)</li> <li>·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23조)</li> <li>· 취급시설검사(제24조)</li> </ul>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			
	사고대비 물질	-		
제한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신고(제18조)</li> <li>· 전량수출자 제조·수입허가(제18조)</li> <li>· 수출승인(제21조)</li> </ul>		
허가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수입·사용허가(제19조)</li> <li>· 제조·수입신고(제19조)</li> </ul>		
금지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약 제조·수입·판매허가(제18조)</li> <li>· 전량수출자 제조·수입허가(제18조)</li> <li>· 수출승인(제21조)</li> </ul>		



**(제한물질) 영업허가의 대상에서 신고의 대상(제한 외 용도)으로 전환**

※ 제한물질이면서 인체급성·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무 준수 필요



**(금지물질) 국외 전량수출을 위한 제조·수입의 경우 예외적 허가 대상으로 관리**

# 영업 허가/신고/면제 총괄

선행절차										신청	점검 및 검사					
유해화학 물질	규정 수량	화방서	설치 검사	관리자		기술 인력	화관법 민원24 신청	위험도	점검			시설검사				
				책임자	점검원				서면점검	현장점검	특별점검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최대보유량 산정	하나 라도	UT 이상	대상 (1군)	대상	1명	취급량 종사자 수 비례	1명	허가	가	1년	5년	점검	1년	검사	4년	
		LT 이상	대상 (2군)						구분없이 1명				면제		나	2년
		LLT 이상	면제		면제	다	3년								12년	
	전부	LLT 미만	면제			다	4년		면제							
						신고										

화관법민원 24 가입  
입지검토

# 자주하는 질문(Q&A)

?

- 1. 니코틴 2% 이하의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신고대상인지?**  
☞ 1% 이상은 신고대상이나, 지침에 따라 2% 이하의 담배용도 경우 비대상(2%는 비대상, 2.0+a %는 대상)
- 2. 택배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배송이 가능한지?**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5.라. 에 따라 우편이나 택배 불가능  
단,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은 택배 가능
- 3. 제조업 특례 제조업이 있는데 사용업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 제조업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는 허가 등 받지 않아도 됨(특례)  
※ 두 업종 모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생산되는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이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면 사용업 대상임
- 4. 최대보유량 동일한 설비 내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물질별 함유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보유량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함유량(%)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물질의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의 총량으로 산정하되 혼합물 비중 값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혼합물 비중을 고려할 수 있음
- 5. 취급시설 검사 최하위 규정수량(LLT) 미만이어도, 시설기준 또는 자체점검 등이 있는지?**  
☞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최하위 규정수량(LLT) 미만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및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자주하는 질문(Q&A)

?

6. **중 된 사업장** 사업장이 복수로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회원가입을 해야하는지?  
☞ 회원가입 시 '등록된 사업장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사업장(주소지)별로 회원가입 신청
7. **화관서 경과조치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지?  
☞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규정수량이 변경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중 화관서 작성수준이 상향되는 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서 제출
8. **소비자특례**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이 무엇인지?  
☞ (대 상) ①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②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 포함  
☞ (내 용) 법 제13조(취급기준), 제14조(개인보호장구), 제15조(진열보관 제한), 제16조(표시 등)에 따른 기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9. **주요 질의 및 답변** ☞ 화관법민원24 → 54번 공지사항 및 53번 자료실 참고

# 민원별 연락처



## 수도권 지역 영업 허가/신고 등 민원/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신규]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취급시설 있는 판매업 (031-790-2672)
- [신규] 취급시설 없는(알선) 판매업 (031-790-2835)
- [변경]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031-790-2835)
- [변경] 판매업 (031-790-2632)
- 관리자 선임 (031-790-2893)
- 시약판매업 (031-790-2826)
- [변경] 사용업 변경 (031-790-2635)
- 폐업·휴업·가동중단 등 (031-790-2632)

※ 인천, 시흥, 안산지역 ☞ **시흥합동방제센터** (031-470-2416, 2475, 2466, 2413)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화학물질안전원

- [화관법민원24] 시스템 오류 (043-830-4063)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043-830-4381), KORA (043-830-4316)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서무 043-830-4345, 4318)

## 취급시설 설치검사/ 한국환경공단 등

- 한국환경공단 (032-590-4980, 498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31-259-7197)
- 한국가스안전공사(031-259-3564)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부 화학안전과

- 법령 및 고시 개정, 유권해석 등 (044-201-6836, 6845, 6832)

# 관련 고시·예규·훈령 등



## 환경부 고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환경부 예규

- 유해화학물질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 환경부 훈령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등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화학물질안전원 예규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 화학물질 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환경부 고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 환경부 예규

- 유해화학물질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 환경부 훈령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등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화학물질안전원 예규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 화학물질 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감사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고 제도 설명회**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